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신·구조문대비표

붙임과 같음

1. 의결주문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재판장이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하도록 함으로써 피고인의 판결내용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함과 아울러 상소권 행사의 합리성 및 적정성을 담보함(안 제147조제1항)
- 피고인의 동의 또는 신청에 따라 판결서 등본을 갈음하여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송달기간을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로 단축함(안 제148조제1항, 제2항)
- 「소년법」 제56조에 따른 조사관에 대한 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함(안 제180조)

3.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붙임과 같음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형사소송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7조부터 제14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7조(판결의 선고)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②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서 등본 등의 송달) ①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 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송달한다.

제18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0조(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 ① 법원은 소년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처벌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피해자,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보고서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7조(판결선고시의 훈계)	제147조(판결의 선고)
<신설>	①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게 이유의 요지를 말이나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의 교부 등 적절한 방법으로 설명한다.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② ----- 선고하면서 -----.
제148조(피고인에 대한 판결등본의 송달)	제148조(----- 판결서 등본 등의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그 판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① ----- 7일 이내에 ----- 판결서 등본을 -----.
<단서 신설>	다만, 피고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 판결서 초본을 송달할 수 있다
다만, 불구속 피고인과 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 구속 피고인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송달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판결서등본을 송달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 ----- ----- 판결서 등본 또는 판결서 초본을 -----.

<신 설>

제180조(소년 형사사건의 조사 위촉) ① 법원은 소년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

1. 소년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2. 피해자의 현재 상태 및 처벌에 관한 의견

3. 그 밖에 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조사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무소나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 보고 또는 필요한 사건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조사관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소년, 보호자, 피해자, 그 밖에 필요한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방문하여 면접, 관찰 또는 심리검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는 출석요구서의 송달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 조사관은 조사의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그 보고서에 양형에 관한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사법지원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358